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 제도 도입 방안

2013. 9

이 의 섭

■ 서론	4
■ 대금 체불의 실태 및 피해	6
■ 법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기능과 위헌성 문제	9
■ 법위반자 공표제도의 일반 현황	14
■ 체불 건설업자 공표 제도의 도입 방향과 「하도급법」 상 도입의 문제점	20
■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의 도입 방안	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요 약

- ▶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도급자, 자재를 공급한 자재 공급자, 장비 서비스를 제공한 장비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 정책 당국은 이러한 대금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금 미지급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대표적인 정책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제도, 하도급 대금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및 하도급대금보증제도 등이 있음.
- ▶ 본고는 건설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자재 공급자·장비업자·현장 근로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범위반사실공표제도를 제시했음.
 - 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위반자의 성명·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임.
 - 범위반공표제도와 관련하여 위헌성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는데, 무죄 추정 원칙 위반, 진술 거부권 위반 및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 범위반사실공표제도를 「하도급법」 또는 「건설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하도급법」보다는 「건설법」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하도급법」은 장비 대여 계약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반면, 「건설법」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던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와 자재 공급자·장비 대여업자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고 규모의 제한도 없음.
- ▶ 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기준일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 간 하도급 대금 등의 미지급으로 행정 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건설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1. 서론

(1) 연구 동기

-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도급한 공사는 여러 단계를 걸쳐 수행되므로 공사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공사의 대가로 원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이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자, 자재를 공급한 자재업자, 장비를 제공한 장비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게 원활히 지급되어야 함.
- 그러나,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도급자, 자재를 공급한 자재 공급자, 장비 서비스를 제공한 장비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¹⁾
- 정책 당국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 등의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하도급 대금 등의 미지급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²⁾
- 첫째, 원도급자³⁾가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수령하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급 기간을 정하여 놓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제도

1)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대금을 하도급 대금, 자재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대금을 자재 대금, 장비업자에게 지급되는 대금을 장비 대금이라 칭하고, 이들과 임금을 총칭하여 하도급 대금 등이라고 칭함.

2)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건설법」과 「하도급법」이 있음. 「건설법」은 건설 하도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적용 대상이며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 관한 특별법이므로 하도급 거래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대하여 「하도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하도급법」 제34조). 「하도급법」 제34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건설법」은 원도급자를 수급인, 하도급자를 하수급인으로 표현하고, 「하도급법」은 원도급자는 원사업자, 하도급자는 수급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보고서는 법률에 관계없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개별 법률에 관한 내용이어서 관련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 둘째, 특별한 요건이 성립하면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발주자하도급대금지불제도
- 셋째,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가 보증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등이 있음.
- 이러한 제도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되고 하도급자와 자재 공급자·장비업자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1995년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재⁴⁾에 대하여 하도급자(또는 원도급자)와 자재 공급자의 자재 공급 계약을 제조 위탁으로 인정하여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로 인정하였음(「하도급법」 제2조 제6항).
 - 첫째,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한 것(예를 들어 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 둘째,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 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 없이 규격 또는 품질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
 - 셋째,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 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 또한, 2007년 「건설법」을 개정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되던 대금 지급 기한에 관한 규정과 대금 직접 지급 규정을 하도급자(또는 원도급자)와 자재 공급자·장비 대여업자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고(「건설법」 제32조 제4항), 2013년 6월부터 장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였음.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미지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체불건설업자공표제도를 제안하고자 함.

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1995-2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고시」.

- 즉, 건설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자재 공급자·장비업체·현장 근로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의 미지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상습체불건설업자공표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보고서 구성

- 본 보고서의 구성은 첫째, 대금 미지급 실태와 피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둘째, 법 위반사실공표제도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봄.
- 셋째, 법위반사실공표제도의 기능과 위헌성 문제를 검토하여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참조하였음.
- 넷째, 법위반사실공표제도를 행정청이 직접 법 위반자의 위반 내용을 공표하는 법 위반자공표제도와 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 수명 사실 공표를 명령하는 제도로 구분하여 현황을 살펴봄.
- 다섯째, 체불건설업자공표제도의 도입 방향과 「하도급법」상 체불건설업자공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체불건설업자공표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음.

2. 대금 체불의 실태 및 피해

(1) 자재·장비 대금 체불 실태

- 국토해양부는 2009년 2월 하도급 대금 실태 점검에 이어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국토해양부 소속 또는 산하 기관의 공사 현장에 대해 자재 대금 및 장비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였음.

- 조사 대상 업체는 원도급업체 4,016개사, 하도급업체 9,144개사로서 총 1만 3,160개사를 조사하였는데, 이 중 원도급업체 130개사, 하도급업체 323개사가 하도급 대금 관련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재 대금 및 장비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및 불법 어음 지급 등 총 3,7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였음.
- 자재 대금 및 장비 대금의 불법 지급 업체 비율은 원도급업체가 조사 대상 업체의 3.2%, 하도급업체가 조사 대상 업체의 3.5%로 나타나 하도급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1> 참조).
- 조사 대상 업체는 하도급업체가 2배 정도였으나, 건수로는 원도급업체의 불법 행위 건수가 657건, 하도급업체가 3,091건으로 나타나 하도급업체의 불법 행위 건수가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불법 지급 유형별로는 불법 어음 형태로 지급한 경우가 2,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 지급이 1,323건, 미지급이 270건으로 나타났음(<표 2> 참조).

<표 1> 자재 및 장비 대금 불법 지급 업체 비율

구 분	조사 대상 업체 수(A)	불공정 행위 업체 수(B)	비율(C=B/A)
원도급업체	4,016	130	3.2
하도급업체	9,144	323	3.5
합계	13,160	453	3.3

주 : 2009년 7월 8월 2개월간 국토해양부와 산하 기관의 공사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로 원도급업체 4,016개사, 하도급업체 9,144개사를 조사했음.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 9. 2), 「건설 자재·장비 대금 불공정 지급 3,748건 적발...시정 지시」.

<표 2> 자재 및 장비 대금 불공정 행위 유형별 건수

구 분	미지급	지연 지급	불공정 어음 지급	총계
원도급업체	77	152	428	657
하도급업체	193	1,171	1,727	3,091
합계	270	1,323	2,155	3,748

주 : 2009년 7월 8월 2개월간 국토해양부와 산하 기관의 공사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로 원도급업체 4,016개사, 하도급업체 9,144개사를 조사했음.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 9. 2), 「건설 자재·장비 대금 불공정 지급 3,748건 적발...시정 지시」.

- 한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근 2년 간(2010~2011년)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체불 건수는 전체 186건으로, 이 중 원도급업체가 25건(13%), 하도급업체가 161건(87%)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체불이 하도급업체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3>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체불 현황(2010. 2월~2011.12월 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원 도 급		하 도 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111	1,536,558	19	230,375	92	1,306,183
2011	75	768,966	6	221,380	69	547,586
계	186	2,305,524	25 (13%)	451,755	161 (87%)	1,853,769

주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공 중 현장 대상 조사 결과임.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2012. 1. 20), “서울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장한다”.

(2) 대금 체불의 피해

- 대금 체불은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공사 전체를 지연시킴.
-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하도급자·자재 공급자·장비대여업자·현장 근로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자재 대금·장비 대금·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근로자 사기 저하에 따른 공사 품질 저하 및 갈등 고조에 따른 협력 작업을 저해함.

-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하도급자·자재 공급자·장비대여업자·현장 근로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자재 대금·장비 대금·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람은 건설공사를 중지하고 농성을 하고 공사 대금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하도급자가 시공하는 공사도 지연됨으로써 공사 전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하도급자가 자재 대금·장비 대금·노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한 자재 대금·장비 대금·노무비를 다시 지급하여 2번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3. 법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기능과 위헌성 문제

(1) 법위반사실공표제도의 기능

- 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위반자의 성명·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의미함.⁵⁾
- 공표는 일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실 행위이므로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의무 위반자의 명단 공개는 명예뿐만 아니라 신용을 추락시키고 그에 의해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상당히 실효성 있는 의무 확보 수단이 되고 있음.⁶⁾

5)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제8판, p.476.

6) 전통적으로 「행정법」상 의무 이행 수단은 행정상 강제 집행과 행정벌 등이 있음. 행정상 강제 집행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 주체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상 강제 집행의 수단으로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 강제 및 행정상의 강제 징수 등이 있음.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의미하는데,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해져 있는 형(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벌금 등)을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하고, 과태료를 과하는 것을 행정질서벌이라고 함.

- 둘째, 정보가 필요한 관련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데 기여함.
- 셋째, 행정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의 효과가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시키고 위법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⁷⁾
- 법위반자공표제도는 행정청이 법 위반자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공표하는 제도와 행정청이 법 위반자에게 법 위반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하는 수명사실공표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2) 법위반사실공표제도의 위헌성 문제

1) 법위반사실공표제도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헌성 문제

- 법위반자공표제도와 관련하여 위헌성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진술 거부권 위반 및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① 무죄 추정의 원칙

-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해 형사 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헌법」 이념에서 나온 것임.

7) 「식품위생법」 제정/개정 취지(2005. 1. 27)에 「식품위생법」 위반 공표제도의 도입 취지를 “식품영업의 경우 영업자의 개인보다는 기업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구매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의 위반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영업자의 준법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② 진술거부권

-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음.
-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절차 또는 공판 절차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진술거부권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에서도 보장됨.

③ 과잉 금지의 원칙

-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과잉 금지의 원칙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 법률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통과해야 과잉 금지의 원칙을 갖춘 기본권 제한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이와 같은 심사 원칙에 따라 심사함.

가. 입법 목적의 정당성

-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제한하려는 목적이 정당해야 함.

나. 수단의 적합성

- 기본권 제한 법률이 취한 수단 및 조치는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함.

다. 침해의 최소성

-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적합한 수단 가운데 국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임.

라. 법익의 균형성

-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도모하고자 하는 법익과 그 조치를 통하여 희생되는 법익 간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원칙임.

2) 법위반자공표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 사례

- 헌법재판소는 구 「공정거래법」(1999. 2. 5. 법률 제582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 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 광고,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상기의 조항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진술거부권 위반 및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결했음.
- “결국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은 공소 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음.
- 또한, “진술거부권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나 법률에 의한 진술 강요에서도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공표 명령은 ‘특정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행위자의 진술을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행위자로 하여금 형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 위반 행위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진술거부권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진술거부권도 위반했다고 판시했음.

-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라는 의미의 이 사건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부분은 기본권 제한 법률이 갖추어야 할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 균형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어서, 결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음(2001헌바43).

3) 법위반공표제도의 변화

- 2001년 헌법재판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공표 명령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정거래법」상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수명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 ‘법 위반 행위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제도였음.
- 법 위반 사실을 직접 행정청이 공표하는 것과는 달리 법 위반자에게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이 아니라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제도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법률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 행정청이 직접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와 달리 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는 등 수명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는 일반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을 침범하지 않아 위헌성 문제가 최소화됨.

- 다만, 최근 법 위반 사실의 공표와 관련한 「의료기기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⁸⁾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확정⁹⁾된 경우 공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행정청이 직접 상습 체불 건설업자를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4. 법위반자 공표제도의 일반 현황

- 법위반자공표제도는 행정청이 법 위반자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공표하는 제도와 행정청이 법 위반자에게 법 위반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1) 법위반자공표제도

1) 상습 「하도급법」 위반자 명단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즉,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시정 권고)하거나 명할(시정 명령) 수 있음(「하도급법 제25조의 제1항).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 법 위반 횟수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제도를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음(「하도급

8) 「의료기기법」(오세재 의원)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보고서(2013. 4).

9) 행정 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 수단을 다 거친 때에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

법」 제25조의4 제1항).

-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를 상대로 과징금·벌칙에 더하여,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하고(시정 조치별 부과 벌점은 <표 4> 참조), 벌점의 누산 점수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고발 등을 하고 있음.

<표 4> 「하도급법」의 조치 유형별 벌점 부과 점수

유형	경고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견)	경고 (신고 또는 직권 인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25	0.5	1.0	2.0	2.5	3.0

- 상습 법 위반자 공표는 직전 연도 과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 점수 4점 이상인 경우에 명단을 공표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20개사, 2012년 7개사, 2013년 2개사를 하도급 거래 상습법 위반자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음.

2) 임금 체불자 명단 공표

- 고용노동부 장관은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2012년 2월1일 도입하였음(「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 임금 체불자 명단을 공개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공개 여부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기본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5일 234명 체불 사업주 명단을 최초로 공개하였는데, 이 중 48명이 건설 사업주임.

3) 상습·고액 국세 체납자 명단 공표

- 국세청장은 체납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의 인적 사항, 국세 추징 명세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로 2004년 1월 1일에 도입하였음.
- 공개 여부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함.
- 국세청장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
-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여 공개 대상자를 선정함.
- 최근 고액 국세 체납업자 명단 공개 상황을 살펴보면 고액 체납자와 이들이 체납한 국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표 5> 참조).
 -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인원은 2008년 800명에서 2012년 7,21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들이 체납한 국세는 2008년 3조 5,211억원에서 2012년 11조 777억원으로 2011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5> 연도별 국세 고액 체납 명단 공개자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명단 공개	인원	800	656	2,797	1,313	7,213
	체납액	35,211	25,417	56,413	32,774	110,777

주 : 명단이 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2012년은 기존 공개자의 10월까지의 납부액).

4)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여 공개 대상자를 선정함.
-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상황을 살펴보면 2011년 지난해보다 3,418명 증가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됨에 기인한 것임.

<표 6> 연도별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 공개자 현황(서울시의 경우)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	1,252명	1,496명	1,221명	1,348명	1,227명	4,645명

5) 「식품위생법」 위반 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취소, 폐쇄조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공표하여야 함. 2005년 7월 28일 도입되었음(「식품위생법」 제84조).

6) 유전자 변형 표시 의무 위반 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의무자가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 명령, 판매 등 거래 행위의 금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함. 2009년 11월 9일 도입되었음(「농산물품질관리법」 제59조 제3항).

<표 7> 범위반자공표제도의 내용

범위반자공표제도	공표 요건	공표 내용
상습 「하도급법」 위반자 명단 공표 (「하도급법」 제25조의 4)	- 과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별점 누산 점수가 4점 이상인 자	- 법인 및 대표자 이름과 주소
체불 임금 사업주 명단 공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 중 ·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	- 체불 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 -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상습·고액 국세 체납자 명단 공표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5억원 이상 체납자	- 체납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포함)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표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1항)	-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 체납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포함)
「식품위생법」 위반자공표제도 (「식품위생법」 제84조)	- 허가 취소, 폐쇄 조치, 과징금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의무 위반자 공표 제도(「농산물품질관리법」 제59조)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 명령 처분이 확정된 사업자	-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

(2) 법 위반자에 대한 수명사실공표명령제도

1) 「공정거래법」 시정 명령 등 수명사실공표제도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공정거래법」 제5조), 기업 결합의 제한 등(「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공정거래법」 제21조),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공정거래법」 제24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공정거래법」 제27조)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할 수 있음.¹⁰⁾

2)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수명사실공표명령제도

-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25조 제3항).
- 1984년 「하도급법」 제정 당시에는 행정청의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1995년 1월 4일부터 ‘원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수명 사실 공표명령’ 제도로 변경되었음.
- 그러나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받은 수명 사실 공표 명령 사례는 전무함.

3)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의무 위반자 시정 명령 등 수명 사실 공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 명령 및 거래 행위의 금지처분 수명 사실 공표를 명령할 수 있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8조 제2항).

10) 「공정거래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표 8> 범위반자공표명령제도의 내용

범위반자공표명령제도	공표 명령 요건	공표 명령 내용
불공정 거래 행위 시정 명령 수명 사실 공표(「공정거래법」 제5조, 제16조 제1항, 제21조, 제24조, 제27조)	-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자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수명 사실 공표 (「하도급법」 제25조 제3항)	-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및 거래 행위의 금지처분 수명사실 공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8조 제2항)	- 시정명령 및 판매를 금지처분을 받은 자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5.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의 도입 방향과 「하도급법」 상 도입의 문제점

-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위반(하도급·자재 대금 미지급 포함)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를 명령할 수 있음(「하도급법」 제25조 제3항).
- 즉,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과 일부 자재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 시정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수명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령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불특정 다수가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의 권익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공표 명령을 하는데¹¹⁾ 공표 명령 사례는 전무함.
- 따라서, 현행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수명사실공표제도를 개선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장비·자재 대금 체불건설업자공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1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41호).

- 이하에서는 체불건설업자공포제도의 도입 방향과 현행 「하도급법」 상 체불건설업자공포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함.

(1) 체불건설업자공포제도 도입 방향

- 체불건설업자공포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함.
- 첫째,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장비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비 대금, 그리고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자재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는 자재 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포괄하는 제도로 설계되어야 함.
- 둘째, 「헌법」 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함.

(2) 「하도급법」 상 체불건설업자공포제도 도입의 문제점

- 상기의 체불건설업자공포제도 도입 방향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하도급·장비·자재 대금 체불건설업자공포제도를 「하도급법」에 도입할 경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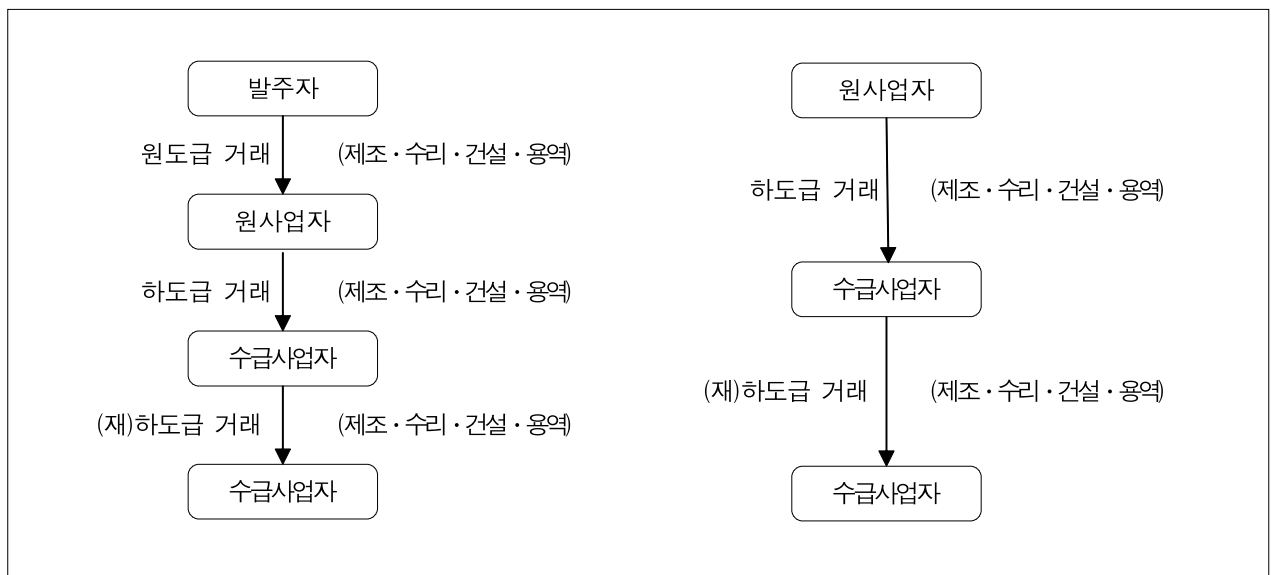
1) 장비 대여 계약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수리 위탁·건설 위탁 또는 용역 위탁을 하고,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를 의미함¹²⁾(「하도급법」 제2조 제1항)(<그림 1> 참조).

12) 「하도급법」 상 하도급 거래는 원도급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건설공사에서 건설회사의 자체 공사처럼 발주자인 동시에 원도급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음. 형식상 원도급 관계이지만 도급인이 자신이 직접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

- 현행 「하도급법」은 제조 위탁(제조 하도급)은 원사업자가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건설업자) 또는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용역사업자)인 경우에도 하도급 거래에 해당되나, 건설 위탁(건설 하도급)은 원사업자가 건설업자여야 하고, 용역 위탁(용역 하도급)은 원사업자가 용역 사업자여야 함.
- 건설업의 경우 자재 공급자가 자재를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제조 위탁에 해당되어 「하도급법」이 규율하는 하도급 거래에 해당되나, 장비대여업자가 장비를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업자가 장비업자로부터 건설장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건설장비 서비스가 ‘용역 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자가 용역 사업자가 아니어서 「하도급법」상 용역 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그림 1>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거래



주 : 제조 위탁(제조 하도급)은 원사업자가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건설업자) 또는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용역 사업자)인 경우에도 하도급 거래에 해당되나, 건설 위탁(건설 하도급)은 원사업자가 건설업자여야 하고, 용역 위탁(용역 하도급)은 원사업자가 용역사 업자여야 함.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그 중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거래에 해당됨. 또한, 하도급자가 하도급 받은 것을 재하도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거래에 해당됨.

2) 소규모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하도급법」은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제조 위탁(제조 하도급)과 수리 위탁(수리 하도급)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건설 위탁(건설 하도급)인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 용역 위탁(용역 하도급)인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원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여 이들이 체결하는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음(「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표 9> 참조).
-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하도급자가 자재공급자와 체결하는 자재공급 계약은 「하도급법」상의 하도급 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표 9> 「하도급법」 적용 대상 원사업자 제외 기준

하도급 거래 종류	연간 매출액
제조 위탁·수리 위탁(제조 하도급·수리 하도급)	-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자
건설 위탁(건설 하도급)	-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용역 위탁(용역 하도급)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 :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3) 소결론

- 건설공사의 하도급·장비·자재 대금 체불건설업자공표제도를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방안은 장비대여계약과 소규모인 하도급자가 체결하는 자재공급계약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하도급법」은 건설업 이외의 하도급 거래도 규율하므로 적절하지 못함.
- 따라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등 체불건설업자공표제도는 「건설법」에 도입하는 방안이 타당함.

6.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의 도입 방안

- 「건설법」에서는 건설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지급 의무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범위반공표제도는 없음.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사유는 다음 <표 10>과 같음(「건설법」 제81조).

<표 10> 「건설법」상 시정명령 등의 사유(「건설법」 제81조)

·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기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 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건설법」에서 하도급 대금에 관한 규정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 만기일을 말함)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임(「건설법」 제34조 제1항).
- 앞에서 지적했듯이 2007년 「건설법」을 개정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던 대금 지급 기한에 관한 규정을 하도급자(또는 원도급자)와 자재공급자·장비대여업자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음(「건설법」 제32조 제4항).
- 따라서, 체불건설업자공표제도를 「건설법」에 도입하면 하도급·자재·장비 대금을 포괄하는 체불건설업자공표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건설법」에 체불건설업자공표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1) 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 선정 기준

- 명단 공표 기준일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 간 하도급 대금 등 미지급(「건설법」 제34조 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2회 이상 확정¹³⁾된 건설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로 함.
- 대금 체불자는 지속적으로 다른 관련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표 요건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 가급적 신속히 대금 체불자를 공표하여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의 정보는 되도록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체불 총액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지방세기본법」의 공표 제도와 같이 3,000만원 이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앞에서 지적했듯이 「근로기준법」은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게 되어 있음.
 - 「지방세기본법」은 3,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 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음.

2) 공표 대상자 선정 절차

- 하도급 대금 등 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두어 명단공개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 공개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3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감안, 재심의하여 공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함.
- 하도급 대금 등 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고위 공무원 3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13) 행정처분을 다룰 수 있는 제소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법」 제27조)이 경과하거나, 쟁송 수단을 다 거쳐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

2인, 교수 2인, 사회의 덕망 있는 자 3인 등으로 구성함.

<표 11> 대금체불업자공표제도의 심의위원회 명칭 및 구성

구 분	명 칭	구 성
임금 체불업자 명단 공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 · 고용노동부 고위 공무원 3인(장관 위촉) ·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 2인(장관 위촉) · 교수(부교수 이상) 2인(장관 위촉) · 사회의 덕망 있는 자 3인(장관 위촉)
국세 체납자 공표 제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 · 국세청 고위 공무원 4인(국세청장 임명)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인(국세청장이 위촉)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 제도(안)	하도급 대금 등 체불정보심의위원회(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 ·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3인(장관 임명) · 변호사 중 2인(장관 위촉) · 교수(부교수 이상) 2인(장관 위촉) · 사회의 덕망 있는 자 3인(장관 위촉)

3) 공개 범위 및 방법

- 공개 범위는 「근로기준법」 상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와 동일하게 체불 사업주의 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상호·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이전 3년 간 임금 등 체불액
- 공개 방법은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 장소에 3년 간 게시함.

4) 체불 건설업자에 대한 불이익 부여

- 「건설법」에 따라 공표된 하도급 대금 등 체불 건설업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표된 임금 체불 사업주(건설업자인 경우에 한함)에 대해 시공능력 평가 및 입찰시 감점을 부여함.

이의섭(연구위원 · eslee@cerik)